

② 용자의 질차·용자한도액·상환조건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등) 구청장은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를 금융기관에 위탁한 경우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용자금의 사용등) ① 구청장은 기금을 용자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용자금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용자받은 중소기업자가 기금의 용자신청을 할 때에 제출한 사업계획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 대출의 해지 또는 회수를 하거나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의 보고) 구청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수물품취득승인(안)심사보고서

'93. 7. 8.
총무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93. 6. 29. 마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93. 7. 2.

다. 상정일자: 제17회임사회 제2차위원회('93. 7. 8.)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재무과장 김영찬)

가. 제안이유

우리구 행정업무 수행상 필요한 정수물품을 취득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취득대상 물품현황

컴퓨터4대(13,783천원)와 소형승용차 2대(9,200천원)등 총 2개품목 22,983천원을 신규 취득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건재)
승인 요청한 물품은 컴퓨터와 불법주차 단속을 위한 소형승용차로 승인시 행정의 사무자동화와 업무능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동물품에대한 본회의 승인을 전제로, 금번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에 취득예산을 계상한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며, 향후에는 정수물품취득승인안을 먼저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후 예산에 계상하여 법적절차를 준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요지(유남렬위원): 지역교통과 소유차량 현황은?

답변요지(김진환 지역교통과장): 차량단속용으로 승용차 1대와 베스트 1대가 있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사항: 없음

정수물품취득승인(안)

의안번호	215
------	-----

제출년월일: 1993년6월29일
제출자: 마포구청장

1. 제출이유: 우리구 행정업무수행상 필요한 정수물품을 취득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취득대상물품현황(총괄)

(단위: 천원)

구분	품목	수량	금액	비고
계		2	6	22,983
신규취득		2	6	22,983

3. 관계법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

'93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

1. 총괄내역

(단위: 천원)

구분	승인요청			승인			불승인		
	품목	수량	금액	품목	수량	금액	품목	수량	금액
계	2	6	22,983						
신규취득	2	6	22,983						

2. 신규취득

(단위: 천원)

구분	정수		승인요청							승인		불승인		
	실수	부족	부서별	기준			수량	단가	금액	신규취득사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정수	실수	부족								
총계						6		22,983						
컴퓨터 (486DX)	1		세무1과	1	0	1	1	11,500	11,500	정수부족				
	0	1												
컴퓨터 (286AT)	7		"	7	4	3	3	761	2,283	"				
	3	4												
소형승용차 (티코)	2		지역교통과	2	0	2	2	4,600	9,200	"				
	0	2												

3. 신규취득세부설명자료

(단위: 천원)

물품명	취득부서	신규취득사유	신규취득물품내역				비고
			규격	단가	수량	금액	
컴퓨터 (486DX)	세무1과	재산세 표준화 전산업무수행(내무부시세13430-90 [93. 4. 30]시세무 13430-606[93. 5. 26])	486DX	11,500	1	11,500	내무부 재산세 표준화 계획에 선정된 기종임
컴퓨터 (286AT)	"	"	286AT	761	3	2,283	"
소형승용차	지역교통과	자동차의 급증으로 주요도로에서 불법주차가 상존하고, 고질적인 상습지역 및 단속망을 교묘히 피하는 사례등 잘못된 주차행태증가로 주차단속 기동력 확보 및 효율적인 주차단속활동을 위한 주차단속원 전용 경승용차 확보운용계획에 의함(시장방침 1097호[92. 11. 24] 및 주차30400-1242 [92. 11. 25]호와 주차63310-721[93. 6. 15])	티코(DX)	4,600	2	9,200	조달청 단가계약된 물품으로 주차단속원 경승용차 확보계획에 의거 시본청 선정물품임.